

변경대비표

[신탁계약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 년 9 월 8 일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S-P2 클래스) 및 클래스 명칭변경(S-P → S-P1)
 - 펀드명칭 변경(Allset 삭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NH-Amundi Allset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이라 한다. ②~③ (생략)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생략) - Class S-P 수익증권 - <신설>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NH-Amundi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이라 한다. ②~③ (현행과 동일)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현행과 동일) - Class S-P1(연금저축) 수익증권 -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u>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1~11. (생략) 12. Class S-P 수익증권 13~14. (생략) 15. <신설>	1~11. (현행과 동일) 12. Class S-P1(연금저축) 수익증권 13~14. (현행과 동일) 15.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제24조의2(수익증권의 판매기준)	1~11. (생략) 12. Class S-P 수익증권 13~14. (생략) 15. <신설>	1~11. (현행과 동일) 12. Class S-P1(연금저축) 수익증권 13~14. (현행과 동일) 15.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u>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9조(보수)	<신설>	<p>15. Class S- P2(퇴직연금)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8.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9)</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p>
제40조(판매수수료)	1~15. (생략) <신설>	1~15. (현행과 동일) 15.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 해당사항 없음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 (생략) ④ <신설>	<p>① ~ ③ (현행과 동일)</p> <p>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한다.</p> <p>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p> <p>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p>
부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변경시행일) 이 변경신탁계약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p>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년 9월 8일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S-P2 클래스) 및 클래스 명칭변경(S-P → S-P1)
 - 펀드명칭 변경(Allset 삭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변경 클래스 추가 클래스 명칭 변경	NH-Amundi <u>Allset</u>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신설> Class <u>S-P</u> (연금저축)	NH-Amundi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클래스 추가(S-P2(퇴직연금) 클래스) Class <u>S-P1</u> (연금저축)
제1부/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u>Allset</u>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중략)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신설>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현행과 동일)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u>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 종류형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신설>	(2) 종류형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u>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2부. 11. 가. (3) 종류별 모집제한	종류별 가입자격 - (중략) - Calss (S-P) - <신설>	종류별 가입자격 - (현행과 동일) - Class <u>S-P1</u> (연금저축) - <u>Class S-P2(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u>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신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u>연금저축</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u>퇴직연금</u>))
제5부 1. (3) 투자자 총회 결의사항	1. ~ 5. (생략) <신설>	1. ~ 5. (현행과 동일) * <u>집합투자계약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u> 1. <u>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합니다.</u> 2. <u>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u> 3. <u>지급시기: 변경일 전일</u>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 년 9 월 8 일
3. 정정사유:
 - 펀드명칭 변경(Allset 삭제)
4. 정정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NH-Amundi <u>Allset</u>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NH-Amundi 글로벌 실버에이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